

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4년 4월 28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4. 19(월) 이만재 의원의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4. 28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4. 28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이만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94년 개정된 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비현실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본 조례 제13조중 「별표 1」에 규정된 일비 5만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7만원으로 2만원 인상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94년 지방자치법시행령(94. 7. 6)의 개정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

개정도 없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 인상된 7만원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.

- “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” 에서도 각종 회의참석수당 및 위원회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본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는 일비를 지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 론 요 지 :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.

붙 임 :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